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66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송달, 주거지 및 근무지 교부송달 등을 추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행정처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사전통지 공고

① 대상

당사자명	출생년월	주소	예정된 처분 내용
김*중	1965년 1월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 1)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2021년 300%, 2022년 318% 지급 결정)
- 2) MBC 및 관계사(MBC플러스, MBC아트, 대구MBC)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 3)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관련)
- 4)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 1)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검증
- 2)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 3)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사회공헌 지원사업 등)

다. MBC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

- 근거법령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제5조(업무), 제7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구성), 제10조(이사회 기능),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방송법 제1조(목적),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 예정처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③ 의견제출

- 제출기한 : 9월 11일(월) 12:00까지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행정처분 담당자 : 권혁준 사무관

- 연락처 : 02-2110-1415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nexly@korea.kr

o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o 유의사항

-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문실시

o 청문일시 : 9월 11일(월) 10:00부터 12:00까지(2시간)

o 청문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과천청사 2동 5층)

o 청문 담당자 : 권혁준 사무관

o 청문 주재자 :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대표청문주재자), 법무법인 김장리 조남대 변호사(청문주재자)

o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